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68
----------	------

발의연월일 : 2020. 7. 7.

발 의 자 : 김원이 · 변재일 · 박홍근
홍익표 · 강훈식 · 신정훈
위성곤 · 유동수 · 강민정
김경만 · 박영순 · 서영석
양정숙 · 윤재갑 · 이진(비)
장철민 · 조오섭 · 최혜영
한준호 · 허영의원
(2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체의 피부에 무늬를 새기기 위해 사용되는 인체용 염료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유해물질 노출 우려 및 부작용 등 그 위해성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됨에 따라 보건위생상 위해를 방지하고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한편, 화학제품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높아지면서 정부합동대책으로 인체에 직접 접촉하는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품과 함유물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조정된 바 있음.

이에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관리하고 있는 인체용 염료를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른 위생용품의 종류에 신설하여 제품에 대한 사전·사후 안전관리를 강화함으로써 국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보건위생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한 위생관리가 필요한 용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용품”을 “인체에 직·간접적으로 접촉하는 용품으로서 보건위생 확보를 위하여 특별한 안전관리가 필요한 용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4)를 5)로 하며, 같은 목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 인체용 염료: 인체의 피부에 무늬를 새기기 위하여 피부 착색을 유도하는 염료 또는 물질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위생용품”이란 <u>보건위생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한 위생 관리가 필요한 용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용품을 말한다.</u></p> <p style="margin-left: 2em;">가. ~ 다. (생 략)</p> <p style="margin-left: 2em;">라. 기타 위생용품</p> <p style="margin-left: 4em;">1) ~ 3) (생 략)</p> <p><u><신 설></u></p> <p style="margin-left: 4em;">4) (생 략)</p> <p>2. ~ 4. (생 략)</p>	<p>제2조(정의) ----- -----.</p> <p>1. -----<u>인체에 직·간접적으로 접촉하는 용품으로서 보건위생 확보를 위하여 특별한 안전관리가 필요한 용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u></p> <p style="margin-left: 2em;">가. ~ 다. (현행과 같음)</p> <p style="margin-left: 2em;">라. -----</p> <p style="margin-left: 4em;">1) ~ 3) (현행과 같음)</p> <p style="margin-left: 4em;">4) <u>인체용 염료: 인체의 피부에 무늬를 새기기 위하여 피부 착색을 유도하는 염료 또는 물질</u></p> <p style="margin-left: 4em;">5) (현행 4)와 같음)</p> <p>2. ~ 4. (현행과 같음)</p>